작물경영연구과
담당자 : , 홍정기
(033) 258-5726, thank1200@empal.com

농촌민박 운영농가 자격강화 및 마을공동 운영시 비과세 범위 확대

1. 현황 및 문제점

◦ 주 5일근무제의 확산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증가
  - 기존 민박집 보다 깨끗하고 시설 좋은 펜션형 고급 민박 선호 추세

◦ 펜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·제도적 장치 부재로 비농업인 운영 펜션 증가 추세
  - 기존 농촌민박 위축 및 조세 회피형 숙박시설 증가 야기

◦ 농림부, 농진청, 행자부, 지자체 등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촌관광 및 숙박시설 조성
  - 소유권 마을공동 명의, 법인격 없는 단체의제(국세청), 일반과세자로 분류

2. 현행제도(현행정책)

◦ 민박의 정의 및 시설기준 : 농어촌정비법 2조 8, 시행령 9조
  -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

◦ 펜 션
  - 제주도 개발특별법(2000. 1. 28), 시행령 11조 : 시설기준 및 등록기준 제시
  - 기타 지역 : 농촌지역에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유사펜션 운영

◦ 관광펜션업 :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6

-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행위
- 기존 농촌민박과 유사펜션과 구분

◦ 농가부업형 소득에 대한 우대조항

- 소득세법 시행령 및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객실이 7실 이하인 농가부업형 민박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공중위생 시설기준 및 점검 면제

3. 연구결과('04)

◦ 농어촌 휴양시설

(단위 : 개)

구 분	개 별 농 가		마 을 단 위		
	농촌민박	펜션형민박	계	체험마을	정보화마을
강 원	3,101	1,137	31	7	24
전 국	-	-	228	45	193

※ 펜션형 민박 : 최근 수년 내 민박용도로 활용되는 시설(스틸, 목조, 통나무)

◦ 운영상의 문제점

- 농어촌지역에 주거용 건축허가를 받아 민박 운영시 아무런 제한 없음
  · 유사 펜션 간판 붙이고, 세금 탈루, 공중위생법 면제 등 → 증가원인
- 펜션형 민박주택의 증가로 기존 농촌민박 수요 감소, 운영 어려움
  · 기존 농가주택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시 많은 자본 소요
- 정부 및 지자체 농촌관광마을 단위로 지원 : 사업명의 주체에 따른 세제상의 문제
  · 개인농가 : 농촌민박(7실 이내) 수입 및 음식물 판매 비과세
  · 마을단체 :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의제,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

◦ 입법취지 및 개선방향

- 농촌민박 수입에 대한 비과세 제도
  · 취지 :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하여 부업형 농외소득에 한해서 보장
  · 현행 : 조세회피 목적으로 펜션 명칭을 붙여 농가민박으로 무분별하게 운영
  · 개선 : 농촌민박의 재정의 및 분류, 운영요건, 등록기준을 명확히 설정
- 펜션사용 명칭문제
  · 개념 : 유럽형 고급민박의 형태로 농촌지역에서 5~10실 기준으로 운영
  · 현행 : 제주도개발특별법(펜션사업), 관광진흥법(관광펜션업) 등 농촌과 괴리
  · 개선 : 농어촌펜션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을 갖추어 등록자에 한하여 명칭사용
- 농촌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조세규정(법인격 없는 단체)
  · 취지 : 정부지원 및 사업형태는 공동사업이 주류, 공동사업은 마을 공동명의 원칙
  · 현행 : 개별농가 단위 비과세, 마을 공동명의는 규정 없어 → 법인격 없는 단체 의제
  → 공동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
  · 개선 : 농업인이 운영하는 마을공동 사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

4. 기대효과

◦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촌민박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외소득 증대

◦ 개별 농가단위 운영에서 마을공동 운영을 통하여 농촌관광 경쟁력 확보

5. 건 의(건의부처 및 부서 : 농림부 농촌개발국)

구 분	현 행 제 도	건 의 내 용
◦ 농촌민박의 정의 - 사업자 자격 기준	◦ 농어촌정비법 2조 8 - 장소 규정만 제시 : 농어촌 지역 - 농업인, 비농업인 구분 없음	◦ 농어촌지역에 농업인이 일정 경지면적을 소유하고, 연간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, 농어촌 지역 ~ ◦ 자격요건 - 농업인 : 연 30일 이상 영농 - 경지면적 : 지방조례 위임
◦ 농촌민박사업 분류 및 등급 문제	◦ 농어촌정비법 2조 8 - 농촌민박만 규정 ◦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6 - 관광펜션업 규정 ◦ 등급 및 명칭문제 : 규정 없음	◦ 농촌민박의 등급 및 종류 - 민박, 펜션, 롯지, 단지형 등 ◦ 등급 및 명칭 표시 - ☆ 표 - 기준 : 별도 제정(시행령)
◦ 농촌민박 공동 사업에 대한 조세문제	◦ 소득세법시행령 9조 -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규정 · 7실 이하인 민박 - 공동사업 : 규정 없음 · 공동사업 : 농가부업 ? ◦ 다수의 농가가 공동참여시 - 비과세사업 범위 확대 필요	◦ 농가부업 소득 범위 확대 - 민박이라 함은 ~ 농업인이나 마을공동 단체가 민박 사업용으로 객실이 ○실 이하인 ~ ◦ 객실범위 차등 - 개인 : 7실 현행 - 단체 : 20실